

## 통상 News Brief 2022 \_ Vol.1

February 2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에서는 2022년 통상 News Brief를 개편하여 발간합니다.

새로운 통상뉴스브리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국제통상 이슈와 신통상 이슈를 아우르는 10가지 이슈로 구분한 단신과 현안을 매월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안 분석] America COMPETES Act 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p.3

#### [주요 단신]

##### 1) 관세 및 쿼터 p.6

- (01.19.) 미국, 영국과 제232조 이슈를 포함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초과생산(global steel and aluminum excess capacity) 협상개시 발표
- (01.20./02.07.) 미국 의회, 보다 포괄적인 제301조 예외 절차 촉구
- (02.04) 미국, America COMPETES Act로 미소마진(De Minimis) 적용예외 도입예고
- (02.07.) 미국, 일본과 철강에 대한 관세율할당 합의 발표

##### 2) 무역구제 p.7

- (02.04.) 미국, America COMPETES Act를 통해 초국경간 보조금 규율 장치 마련
- (02.04.) 미국,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일부 수정 연장 결정

##### 3) 수출통제/경제제재 p.8

- (01.18.) 인도네시아, 수출통제제도 정비 및 팜유 관련 수출통제제도 한시적 운영
- (02.11.) 미국과 EU,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한 對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 합의

#### 4) 투자심사 p.9

- (02.04.) 미국, America COMPETES Act를 통해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심사장치 마련

#### 5) FTA 등 경제블록화 p.9

- (02.01.) 미국, 인도태평양경제협력 프레임워크의 대략적인 구조와 범위 공개
- (02.02.) 미국-브라질 2020 투명성 및 통상규칙 의정서(2020 Protocol on Transparency and Trade Rule) 발효

#### 6) 디지털 p.11

- (02.09.) 미국 상의, 디지털통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촉구

#### 7) 기후변화/환경 p.11

- (01.28.) 프랑스, “보다 지속가능하고 책임감있는 통상(For a more sustainable and responsible trade)”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02.10.)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첫 USMCA 환경 협의 신청

#### 8) 공급망/산업정책 p.12

- (02.04.) 미국 America COMPETES Act로 공급망 회복프로그램(Supply Chain Resilience Program) 도입예고
- (02.07.) 한국-영국 회복력 있는 공급망 MOU 체결
- (02.09.) EU 집행위, European Chips Act 발표

#### 9) 노동 p.13

- (01.25.) 미국 USTR,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통상전략 개발 계획 발표

#### 10) 기타 p.13

- (01.27.) EU,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02.04.) 미 하원, America COMPETES Act 통과

## America COMPETES Act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2월 4일 미 하원은 미국 혁신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America COMPETES Act”를 통과시킴. 이 법안은 작년 상원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인 “USICA”와 조정을 하기 위해 미 의회 양원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로 회부되며, 여기에서 최종 의회 법안이 확정될 예정임

America COMPETES Act는 미국 반도체분야 지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원, 공급망 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대, AI 등 신기술 지원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신흥 기술분야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연구개발 예산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미국의 다양한 대중 견제 정책, 대중국 경제 제재 내용 및 동맹과의 대외협력정책까지 포함하고, 특히 통상 분야까지 다루는 등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안이 양원협의회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 최종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현황)** 작년 6월 미 상원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을 통과시킴. 하원에서도 금년 2월 4일 對중국 견제법안인 “미국경쟁법(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for Manufacturing, Pre-Eminence in Technology, and Economic Strength Act of 2022, America COMPETES Act)”을 통과시킴

- USICA와 America COMPETES Act 모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파적인 법안으로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법안임

**(주요내용)**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비롯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 경제제재 조치 및 통상조치들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구체화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USICA와 America COMPETES Act 모두 통상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법안이 다루고 있는 세부내용과 방식이 달라 향후 미 의회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USICA와 America COMPETES Act가 다루고 있는 주요 통상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b>USICA<br/>Division G: Trade Act of 2021</b>                | <b>America COMPETES Act<br/>Division K: Matters relating to trade</b> |
|---------------------------------------------------------------|-----------------------------------------------------------------------|
|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br>(Section 71001-71002)                         |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br>(Section 101101-101404)        |
| 검열(censorship) 및 디지털무역장벽<br>(Section 71011-71013)             | 무역구제법 개정<br>(Section 102001-102403)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br>(Section 71021-71024)                          | 미소마진(De minimis) 적용예외<br>(Section 103001-103004)                      |
| 공정무역(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br>(Section 71031-71034) | 국가핵심능력검토(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Reviews) (Section 104001)     |
| 통상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행정강화<br>(Section 73001-73006)                    | 일반특혜관세<br>(Section 105001-105002)                                     |
| 일반특혜관세<br>(Section 74001-74003)                               | 2016 미국 제조경쟁력법 등<br>(Section 106001-106004)                           |
|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Miscellaneous Tariff Bills) (Section 74011-75461)  |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Miscellaneous Tariff Bills) (Section 107001-108462)        |
| 2016 미국 제조경쟁력법<br>(Section 75471)                             | <b>Division C-Energy and Commerce</b>                                 |
| 주요 공급망 회복력<br>(Section 2505, 72001-72002)                     |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br>(Section 20201-20208)             |

공통적으로 USICA와 America COMPETES Act 모두 △일반특혜관세(GSP)를 개정하고 △기타수입관세임시철폐(Miscellaneous Tariff Bills, MTBs) 제도의 재도입과 △공정무역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두 법안 모두 국제환경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 국제적으로 인권탄압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 등에 대해서는 GSP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미국내 미생산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제도인 MTBs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정무역 강화를 위해, USICA에서는 중국을 특정하여 홍콩으로의 우회수입 규제강화, 중국의 초과생산(overcapacity) 여부를 검토, 제301조 예외절차 적용시 중국에 대한 별도의 절차마련 등을 내용으로 두고

있는 반면, 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특정국가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닌 전통적인 공정무역 수단이라 볼 수 있는 무역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함

-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인 Adrian Smith는 하원의 법안이 통상측면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표출함

USICA는 공급망 이슈를 동맹과의 대외협력강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Office)의 설립과 국내전략마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국내적 시스템구축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USICA는 강제노동, 지재권보호, 디지털무역장벽 등 WTO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언급되던 주요 어젠다들을 구체화하여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America COMPETES Act는 기존 미국 국내법과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함

**(시사점 및 전망)** 미국의 對중국 견제 패키지법안이라는 공통점에서도 불구하고, USICA와 America COMPETES Act는 상원과 하원의 다른 시각과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

- 백악관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물가를 낮추고(lowering prices), 미국의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며(making the economy stronger),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competiting with Chin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초당적인 협력과 공통 합의사안을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이슈들은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겠으나, 제301조 예외절차, 무역구제법개정, 국가핵심능력검토 등과 같은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1) 관세 및 쿼터

1월 19일 미 상무부·USTR은 영국 국제통상부(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와 ‘글로벌 철강과 알루미늄 초과 생산(global steel and aluminum excess capacity)’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간 대화 개시를 선언

- 영국에서는 이러한 양자간 대화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마무리되지 못했던 FTA 협상 논의재개 또는 EU와 구축한 TTC와 유사한 협의체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음

2월 7일 미국은 일본과도 미 무역확대법 제232조 관련 합의를 이루면서 지난 10월 EU에 이어 두번째로 철강 합의를 도출함

- 미국은 4월 1일부터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연간 125만톤까지는 무관세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합의함. 나아가 EU와 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음
- 비시장적 초과생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구제와 관세 이슈를 미국과 함께 조정해 나가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모니터링 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음. 향후 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합의(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 참여 여부도 논의하기로 함<sup>1</sup>
- 2월 8일 CATO에서는 This (Steel) Deal Is Getting Worse All the Time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체결한 철강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미 상하원 의원들은 무역법 제301조 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예외 절차를 수립할 것을 촉구함

- 1월 20일 141명의 미국 하원의원들도 작년 10월의 예외 절차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좁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그 적용을 받는 상품을 늘릴 것을 요구함. 또한 중요 물품들이 예외 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해 미래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공급망 재배치 노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소급적용 방식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미 상원은 지난 여름 USICA 제73001조를 통해 제301조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 무역법 제301조 자체에는 추가관세 예외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지침이 없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입됨. 무역법 제3장에 제305A조를 두고 제301조 관세 예외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2월 7일에는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41인의 상원의원들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제301조 관세 예외 절차를 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함. 이는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고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제3국으로 공급망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나아가 현재의 예외 절차는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에게 10개월동안 관세를 우선 부담하도록 강제한 후 예외 대상에 대해서만

1. “Japan and the U.S. will confer on entering into discussions on ...”

소급적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2월 8일 미 하원을 통과한 COMPETES Act는 Section 103002를 통해, 비시장경제국가와 우선감시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미소마진(de minimis)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CSIS에서도 De minimi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전개할 경우에는 WTO 합치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2) 무역구제

2월 4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COMPETES Act 법안에는 무역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Leveling the Playing Field Act 2.0이 반영되어 있음

- Division K에서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Title II-Section 102001~Section 102504-에서 무역구제법안 개선을 언급하고 있음
- 연속조사(successive investigation)시 적용되는 특별규칙을 도입하거나 초국경적 보조금(cross-border subsidy)을 규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우회여부 조사(circumvention investigation) 요건을 명확히 하며, 상계조사 시 환율상계관세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공식서한을 보내 이러한 무역구제 제도개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특정기업만을 우대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산업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전달함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이 CSPV(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셀과 모듈에 부과되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

- 바이든 대통령은 CSPV셀 4년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관세할당물량을 2배 증가한 5 gigawatts/year 규모로 늘리고, 긴급관세율을 14.75%로 조정하였음. 긴급관세율은 0.25%씩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3년차에는 14%가 부과될 예정임. 더불어 양면형 모듈(bifacial module)을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함. 이러한 조치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및 한국산 제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나아가 USMCA를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이 전부 혹은 일부 정지될 수 있도록 협상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 작년 6월 8일 캐나다는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USMCA 제10.2.1조 및 제10.2.2조를 위반하였다며 이를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였으며 캐나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짐.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체 수입의 상당한 부분(substantial share of total imports)을 차지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SEIA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고,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TRQ물량을 늘리고, 양면형 모듈을 예외로 한 것은 세이프가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입장임

- CSIS는 The Solar Panel Decision and Signs of a Functional Congress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기후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태양광 설비 보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평가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결정으로 보고 있음
- 앞으로도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제조업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인 Auxin Solar는 2월 8일 중국산 CSPV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하여 우회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해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하였음

- SEIA는 우회수입조사에 반대입장을 밝힘. 미국 태양광 제조에 있어 정부가 공급망 점검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고, 의회에서는 수백억달러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Act”가 논의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사소하고 특정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요청은 미국 태양광에너지 산업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함

### 3) 수출통제/경제제재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1월 Regulation 18을 통해 149개 수입품과 275개 수출품에 대한 수출입통제 제도를 개정함

- Regulation 18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수출입 통제 규정들을 일원화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특히 보조금을 받은 비료(subsidized fertilizer), 금속 잔해나 부스러기(metal remains and scrapings)도 추가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나아가 광물의 경우, △일반상품, △2023년 6월 11일부터 수출금지되는 상품, △주석(tin)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20년 1월 니켈 수출을 금지하였고, EU는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이 진행 중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극 시행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식용유 가격 일원화 및 팜유 수출허가제 도입을 발표

- 식용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을 1리터당 14,000 루피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6개월간 도입하고, 필요시 연장할 것을 발표

- 나아가 국내 식용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규제정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을 제정, 발효함. 해당 장관령에 따라 △팜유(CPO), △정제 팜오일(RBD Palm Olein), △UCO(Used Cooking Oil)을 수출할 경우, 수출기록/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이러한 수출기록/신고 시에는 팜유, 정제 팜오일, UCO를 국내에서 유통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서(Surat Pernyataan Mandiri)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수출되는 팜유 등에 대한 판매계약, 6개월간 수출 및 국내유통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수출업체에게는 사업중지, 사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EU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한 제재패키지에 합의하였음

- 해당 패키지에는 러시아 은행 및 산업에 부과되는 금융제재를 비롯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도 포함됨. EU가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향후 사이버 공격과 같이 물리적 공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에 대응한 제재조치도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함

#### 4) 투자심사

- COMPETES Act는 Section 104001을 통해 무역법 내에 Title X-국가핵심능력검토(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Reviews)를 추가하여 미국인의 해외 투자(outbound investment)를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국가핵심능력검토는 국가핵심능력위원회(Committee on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CNCC)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위원회는 USTR 대표를 의장(Chairperson)으로 하여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12개 부서의 수장(head)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됨
- CNCC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심사 제도인 CIF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와 비교하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함

#### 5) FTA 등 경제블록화

지난 10월 미국이 공식 발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발표됨

- USTR Sarah Bianchi는 2월 1일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컨퍼런스에서 상무부와 USTR이 IPEF 협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통상모듈에서는 노동, 환경, 디지털경제와 경쟁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며 이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규범을 제정할 것이라고 함. 특히 디지털통상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국경간 흐름, 데이터센터의 현지화 요건 등을 경쟁이슈로 다룰 것이라고 함

- IPEF는 일반적 약속과 구체적 사안을 규율하는 다양한 모듈로 구성될 것이며, 통상은 7개 모듈 중 하나로 포함될 것임. IPEF에 포함되는 모듈로 거론되는 것은 △공급망 회복력(supply chain resilience), △인프라(infrastructure), △탈탄소(decarbonization) △세금(tax), △반부패(anti-corruption),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이 있음. 통상모듈의 경우, 시장접근 약속은 없지만 참여국간의 경쟁력과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높은 수준의 규범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일종의 행정적 합의(administrative arrangement)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2월 11일 백악관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5가지-자유(free), 개방(open), 번영(prosperous), 안전(secure), 회복력(resilient)-로 정리하여 발표함

- 특히 세번째 전략인 번영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 체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IPEF는 △ 높은 수준의 노동과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며, △ 개방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와 국경간 데이터의 흐름을 규율하고, △ 다양하고, 개방되며, 예측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안전한 공급망을 발전시켜 나가며, △ 탈탄소와 청정 에너지 투자를 함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함

브라질과 미국은 2011년 체결한 통상 및 경제협력 협정(U.S.-Brazil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을 업데이트한 ‘통상 규칙과 투명성 의정서’(U.S.-Brazil Protocol on Trade Rules and Transparency)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월 2일 발효됨

- 해당 의정서는 USMCA 서명 이후인 2020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합의한 것으로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모범 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반부패(anticorruption) 3가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에 관한 부속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확대하여 수입, 수출, 통관 단계를 포함한 세관 및 기타 국경 정보의 온라인 공표와 무역업자들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모범 규제관행에 관한 부속서는 USMCA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번째로 도입된 것으로 브라질 행정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안의 온라인 공표, 의견수렴 기회 제공 등의 제도적 개선을 언급하고 있음. 나아가 법이나 규제 도입시 규제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장려하고 있음
- 반부패 부속서에서는 횡령과 부패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에 대응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재, 금융기록 공개 및 감사요건 등 재무기록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됨

## 6) 디지털

미국 상공회의소는 The Digital Trade Revolution: How US workers and companies can benefit from a Digital Trade Agreemen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통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전략적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함

보고서는 미국경제에서 디지털경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통상관련 국제규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한 12개국과 14가지 이슈를 우선 논의할 것을 제시함

- 보고서에서는 Digital Dozen이라고 칭한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대만, 영국, ASEAN 회원국들과 높은 수준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나아가 디지털통상협정에 담길 14가지 우선적 고려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음. 우선적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국경간 데이터 흐름, △데이터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와 혁신, △AI혁신과 신뢰 증진, △건전한 규제 환경 촉진, △비차별원칙, △강제기술이전 금지와 기술선택 보장,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위험기반의 산업 해결책 개발,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준수, △인터넷 접근, 소비자 선택 및 모범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의 현대화,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무역원활화 개선, △정부간 협력과 책임(accountability) 추구임

## 7) 기후변화/환경

2022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책임감있는 통상(For a more sustainable and responsible trade)”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 프랑스는 의장국의 수행 기간 동안 새로운 EU의 통상전략에 반영되어 있는 통상과 지속가능한 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을 언급함
- EU 집행위 부위원장인 Dombrovskis는 “유럽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통상정책(A sustainable trade policy to support Europe’s strategic goals)”이라는 제목의 개회사(opening remarks)를 발표함. EU가 지난 2년간 산림파괴를 예방하고, CBAM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3년동안에도 다자적 방식과 양자적 방식, 나아가 EU 차원의 방식을 통해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함
- 제2세션에서는 미국 USTR 대표인 Kathrine Tai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로서의 통상협정의 이용(the use of trade agreements as a lever to achieve sustainability)”이라는 제목으로 keynote 스피치를 함
- 제3세션에서는 WTO 사무총장인 Okonjo-Iweala도 WTO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keynote 스피치를 하면서 통상은 당면한 도전과제의 해결책의 한 부분임을 강조함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첫 USMCA 환경 협의 개시요청

- 미국은 멕시코가 멸종위기종인 바티카 돌고래(vaquita porpoise)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토토아바 어류(totoaba fish)의 불법어획과 밀수를 예방하지 않았으므로 USMCA 제28.4조와 제28.14조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8) 공급망 및 산업정책

미 COMPETES Act에서는 제20204조를 통해 미 상무부에 핵심공급망회복 프로그램(Critical Supply Chain Resilience Program)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공급망 보고서’에서 제안된 것으로 상무부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회계연도 2022-2027년간 4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서 적격 활동(eligible activities)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무상지원, 대출, 대출보증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격활동에는 핵심 상품(critical goods), 산업설비(industrial equipment)의 국내 제조 및 제조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과 영국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영 핵심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 올해 말부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영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인 한국과 최초로 공급망 관련 협상합의를 만들어낸 의의가 있음
- 양국간 반도체, 원자재 등 핵심 물품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요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양국간 무역을 원활히 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됨

EU 집행위에서는 2월 8일 지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법안(Chips Act)을 공표하였으며, 법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 Chips for Europe Initiative, △ 공급안보(security of supply), △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Monitoring and Crisis Response)
- EU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2월 3일 발간된 뉴스레터<sup>2</sup> 참조

2.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703>

## 9) 노동

USTR에서 최초로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개발할 것을 발표함

-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강제노동이 글로벌 통상시스템에서 제대로 대응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음
- 미국은 이를 위하여 USTR의 △기존 통상정책 중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도구에 대한 기관간 심사를 강화하고, △향후 강화해야할 분야를 검토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특히 노조, 시민사회, 민간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용적 절차를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통상협정을 통해 강제노동에 대응하는 미국의 책무를 개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WTO에서 진행 중인 수산 보조금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이슈를 다루고, △TTC를 통해 EU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 나가며, △USMCA에서 약속한 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 모니터링하며, △위구르 강제노동보호법을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음

## 10) 기타

- 1월 27일 EU는 대만대표처를 설치한 것을 이유로 리투아니아산 돼지고기에 대해 중국이 취한 수입금지조치와 리투아니아산 상품에 대한 중국측의 수출통관지연과 통관금지 조치 등이 WTO 의무에 위반된다며 이를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함
- 영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및 캐나다는 상당한 통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협의 단계 참여를 신청함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